

「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」 개정안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비고
제4조 (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) ① ~ ④ (생략)	제4조 (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	
⑤ 사용자 또는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사전통보 및 소명절차를 진행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1.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	⑤ 사용자 또는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사전통보 및 소명절차를 진행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<u><제1호 삭제></u>	추상적/포괄적인 내용 삭제
2. 이용자와 회사가 본 계약에서 규정하는 각자의 시스템 및 권리, 의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3. 주요 재산 또는 상대방이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채권보전조치 또는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	1. 이용자와 회사가 본 계약에서 규정하는 각자의 시스템 및 권리, 의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2. 주요 재산 또는 상대방이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채권보전조치 또는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	
4. 기타 불성실한 업무의 수행 및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	<u><제4호 삭제></u>	추상적/포괄적인 내용 삭제
5. 이용자가 본 계약 체결 후 등록된 서비스 품목을 변경하여 서비스 금지 품목을 거래하는 경우	3. 이용자가 본 계약 체결 후 등록된 서비스 품목을 변경하여 <u>금전유통거래, 전표유통, 자가매출, 사행성 게임, 도박, 대부업, 다단계, 유사수산업,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반사회적인 영업 등 서비스 금지 품목을</u> 거래하는 경우	서비스 금지 품목 구체화
6. 불량거래의 대량 발생 및 사용자 연락두절 등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발생이 명백한 경우	<u><제6호 삭제></u>	추상적/포괄적인 내용 삭제
7. 기타 더 이상 본 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	<u><제7호 삭제></u>	추상적/포괄적인 내용 삭제
8. ~ 10. (생략)	4. ~6. (현행과 같음)	

⑥ 계약의 해지는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	⑥ (현행과 같음)	
제7조 (서비스 이용시간) ① (생략)	제7조 (서비스 이용시간) ① (현행과 같음)	
② 서비스 정기점검, 기술상의 필요, 결재원천사 및 금융기관의 사정 등에 의해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. (다만, 시스템 장애복구,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,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지체없이 사후통지합니다.)	② 서비스 정기점검, 기술상의 필요, 결재원천사 및 금융기관의 사정 등에 의해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. (다만, 시스템 장애복구,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,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고, 통지가 가능한 즉시 이용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안내합니다.)	내용 완화
제8조 (회사의 책임과 의무) ① ~ ② (생략)	제8조 (회사의 책임과 의무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	
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아래와 같습니다. 1. ~2. (생략)	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아래와 같습니다. 1. ~2. (현행과 같음)	
3. 회사가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	3. 회사가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<u>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</u> 가 발생한 경우	진금별 준용
4. 이용자가 동항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·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. 누설·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.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	4. 이용자가 동항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·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<u>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</u> 가 발생한 경우 가. 누설·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.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	진금별 준용
④ ~ ⑦ (생략)	④ ~ ⑦ (현행과 같음)	
제10조 (서비스 제공의 제한) ① 회사는 이용자의 신용도, 매출유형, 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비정상거래의 빈도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	제10조 (서비스 제공의 제한) ① 회사는 이용자의 신용도, 매출유형, 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<u>이용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횟수</u>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	비정상거래의 구체적 정의

<p>②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중지 사유 해소를 위한 이용자의 소명에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,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.</p> <p>1. 서비스 이용에 금지되거나 부적합한 품목을 거래할 경우</p>	<p>②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서비스 제공 제한 사유 해소를 위한 이용자의 소명에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, 서비스 제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</p> <p>1. <u>금전유통거래, 전표유통, 자가매출, 사행성 게임, 도박, 대부업, 다단계, 유사수신업 또는 공시양속에 반하는 반사회적인 영업 등 서비스 이용에 금지되거나 부적합한 품목을 거래할 경우</u></p>	<p>서비스 금지 품목 구체화</p>
<p>2. ~ 3. (생략)</p>	<p>2. ~ 3. (현행과 같음)</p>	
<p>4. 기타 본 약관 내용을 위반할 경우</p>	<p>4. <u>본 약관의 중대한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</u></p>	<p>자구수정</p>
<p>③ 회사는 서비스 제공 제한사유가 해소된 경우 또는 회사와 이용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.</p>	<p>③ 회사는 <u>이용자의 소명이 정당하거나</u> 서비스 제공 제한사유가 해소된 경우 또는 회사와 이용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.</p>	<p>내용완화</p>
<p>④ 이용자는 회사의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,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</p>	<p>④ (현행과 같음)</p>	
<p>제16조 (분쟁처리 및 분쟁조정) ① ~ ② (생략)</p>	<p>제16조 (분쟁처리 및 분쟁조정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	
<p>③ 이용자는 제2항에 따른 회사의 분쟁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,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회사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</p>	<p>③ 이용자는 회사의 <u>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</u>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,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</p>	<p>자구수정</p>
<p>제18조 (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) ① 회사는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중요정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.</p>	<p>제18조 (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) ① 회사는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<u>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</u>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중요정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.</p>	<p>자구수정</p>
<p><제2항 신설></p>	<p>② <u>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</u></p>	<p>전자금융업자용 모델약관</p>

<p>② 회사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 시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.</p>	<p><u>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유포합니다.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페이지에 링크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/u></p>	<p>(‘24.9월 배 제15조 제2항을 약관에 신설</p>
<p>② 회사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 시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.</p>	<p>③ (현행과 같음)</p>	
<p>제23조 (서비스의 제공)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는 지급결제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. ① ~ ② (생략)</p>	<p>제23조 (서비스의 제공)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는 지급결제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.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	
<p>③ 가상계좌결제대행서비스: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자 경우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<u>이용자</u>만의 고유한 일회용 계좌의 발급을 통하여 결제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</p>	<p>③ 가상계좌결제대행서비스: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자 경우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<u>이용자</u>고유의 <u>입금 전용 가상계좌</u>의 발급을 통하여 결제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</p>	<p>내용 완화</p>
<p>④ 간편결제대행서비스: 이용자가 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결제수단이 신용카드, 계좌이체인 경우로서, 정보를 매번 입력할 필요 없이 관련 정보의 한번 등록만으로 상품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를 말합니다. 단, 간편결제대행서비스 신청 시 결제원천사가 정하는 이용자의 본인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며, 결제원천사의 인증 및 승낙이 있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</p>	<p>④ (현행과 같음)</p>	
<p>⑤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‘휴대폰결제대행서비스’, ‘무역거래정산대행서비스’ 등이 있습니다.</p>	<p>⑤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‘휴대폰결제대행서비스’, ‘무역거래정산대행서비스’, ‘<u>선불전자지급수단정산대행서비스</u>’ 등이 있습니다.</p>	<p>결제수단 추가</p>
<p>제24조 (이용금액의 한도) 회사의 정책 및 유관기관(결제원천사, 금융기관 등)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결제수단별 월 누적 결제액, 결제 및 정산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</p>	<p>제24조 (이용금액의 한도) 회사의 정책 및 유관기관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결제수단별 월 누적 결제액, 결제 및 정산한도가 제한될 수 <u>있으며, 회사는 그 기준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</u></p>	<p>내용완화</p>

	안내합니다.	
제26조 (결제대금의 지급 등) ① (생략)	제26조 (결제대금의 지급 등) ① (현행과 같음)	
②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받을 경우 회사가 정한 기일 내에 통신판매업자 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합니다.	②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받을 경우 회사가 정한 기일 내에 판매자 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합니다.	용어정비
③ 회사는 이용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영업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의 제시 없이 그 공급받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용자의 동의 없이 통신판매업자 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.	③ 회사는 이용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영업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의 제시 없이 그 공급받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용자의 동의 없이 판매자 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.	용어정비
④ 회사가 통신판매업자 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용자가 그 결제대금을 환급 받을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, 회사는 통신판매업자 가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령에 준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.	④ 회사가 판매자 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용자가 그 결제대금을 환급 받을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, 회사는 판매자 가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령에 준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.	용어정비
⑤ (생략)	⑤ (현행과 같음)	
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용자와 통신판매업자 사이의 여하한 법률관계에 기인하여도 회사가 해당 결제대금을 이용자에게 반환을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, 이용자와 통신판매업자 사이의 반품, 계약 해제, 환불 등 법률관계는 이용자가 직접 통신판매업자 와 처리하여야 합니다.	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용자와 판매자 사이의 여하한 법률관계에 기인하여도 회사가 해당 결제대금을 이용자에게 반환을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, 이용자와 판매자 사이의 반품, 계약 해제, 환불 등 법률관계는 이용자가 직접 판매자 와 처리하여야 합니다.	용어정비
제29조 (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및 차감) ① ~ ⑤ (생략)	제29조 (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및 차감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	
<제6항 신설>	⑥ 회사는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그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축소 또는 변경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제33조 제1항 제5조에 따라 이용자가 잔액 전부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.	전자금융업자용 모델약관('24.9월 배정) <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및 차감> 제6항 내용 신설

제31조 (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) ①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실지명의 당 최고 200만원을 그 보유 한도로 하고, 실지명이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50만원을 보유 한도로 합니다. 단, 보유 한도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.	제31조 (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) ①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실지명의 당 최고 200만원을 그 보유 한도로 하고, 실지명이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50만원을 보유 한도로 합니다. 단, 보유 한도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며, 회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사전 안내합니다.	내용완화
② 회사의 정책 및 결제업체(이동통신사, 카드사 등)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결제수단 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	② 회사의 정책 및 결제업체(이동통신사, 카드사 등)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결제수단 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으며, 회사는 그 기준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.	내용완화
제32조 (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 및 소멸시효) ① (생략)	제32조 (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 및 소멸시효) ① (현행과 같음)	
② 회사는 모바일 웹 화면 등을 통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 설정 여부 및 그 기간을 공지합니다.	② 회사는 앱, 모바일 웹 화면 등을 통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 설정 여부 및 그 기간을 공지합니다.	내용 완화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	
④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용자는 회사 등에 물품 등의 제공, 환급 및 잔액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.	④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일 또는 최초 충전일 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용자는 회사 등에 물품 등의 제공, 환급 및 잔액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.	내용 완화
<제5항 신설>	⑤ 회사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일 전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,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 여부와 방법, 유효기간 경과 후 소멸시효 완성 전 잔액의 90%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.	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준용
제33조 (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) <제1항 신설>	제33조 (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) ① 이용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에 대하여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관련 환불수수료 부과 여부	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준용

	<p>및 부과기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. 다만, 신규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기존 수수료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 시행 1개월 전에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공지하고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.</p>	
<p>① 이용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에 대하여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 전부를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환급합니다. 다만,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고 이용자의 단순 반심에 의한 경우 환급을 거절하거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급할 수 있습니다.</p>	<p>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 전부를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환급합니다.</p>	잔액환급 내 용 이동 (본 조 제1항 신설)
<p>1.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구매액 전부를 환불 요청하는 경우</p>	<p>1. 선불전자지급수단의 <u>구매일(충전일)</u>로부터 7일 이내 <u>구매액(충전액)</u> 전부를 환불 요청하는 경우</p>	내용 완화
<p>2. 천제지번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가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</p>	<p>2. (현행과 같음)</p>	
<p>3.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</p>	<p>3.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 <u>에서</u>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</p>	자구수정
<p>4.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구매하거나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이 구매시점 또는 최종 충전시점의 잔액을 기준으로 60% 이상 (1만원권 이하는 80% 이상)을 재화나 용역의 구매에 사용한 후 잔액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(다만, 선물하기, 양도 등은 위 사용에 포함되지 않음)</p>	<p>4. (현행과 같음)</p>	
<p><제5호 신설></p>	<p>5. <u>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그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. 단, 가맹점 폐업, 가맹계약 기간의 만료,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</u> 가.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38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나. 가맹점이 「전자금융거래법」, 「전자상</p>	전자금융업자 용 모델약관 ('24.9월 배포) <환급기준> 제4항 제4조 내용 신설

	<p>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와 관련되는 법령으로서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맹점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약관에 따라 가맹점계약을 해지하는 경우</p>	
	<p>다.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더라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가맹점이 충분하여 가맹점이 제공하는 재화·용역을 구입하려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</p> <p>라.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</p>	
<p>② 제휴카드의 경우 제휴사의 환급 기준이 별도로 있는 경우 제휴사의 환급기준을 먼저 적용합니다.</p>	<p>③ <u>제휴카드의 경우 가입시 제휴사의 환급 기준이 적용됨을 회사는 사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. 다만, 제휴사의 환급 기준이 별도로 없는 경우 회사의 환급 기준을 적용합니다.</u></p>	내용완화
<p>③ 재화와 용역의 구매나 이벤트 등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, 제1항 제4호의 사용액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또한 회사가 이용자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환급하는 경우 무상 제공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소멸합니다.</p>	<p>④ 재화와 용역의 구매나 이벤트 등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, 제1항 제4호의 사용액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</p>	자구수정
<p>④ 회사는 이용자의 현금 용통 목적의 부정 환급을 제한하기 위하여 환급 한도 및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</p>	<p>⑤ <u>회사는 이용자의 현금 용통 목적의 부정 환급을 제한하기 위하여 환급 한도 및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, 회사는 그 기준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.</u></p>	내용완화
<p>⑤ 이 약관에서 환급에 대하여 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모바일 웹 화면 등을 통해 공지합니다.</p>	<p>⑥ <u>이 약관에서 환급에 대하여 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앱, 모바일 웹 화면 등을 통해 공지합니다.</u></p>	내용 완화
<p><제7항 신설></p>	<p>⑦ <u>제1항 제5호에 따른 환급의 경우,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에 관한 내용용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맹점 축소 또는 이용 조건이 변경되는 날로부터 30일 이</u></p>	전자금융업자 용 모델약관 ('24.9월 배포) <환급기

	상 게시합니다.	준> 제7항 내용 추가
<p>제34조 (선불충전금의 관리 및 관련 공사)</p> <p>㉑ 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위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.</p> <p>㉒ 회사는 배 영업일 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중인 자금 총액의 상호 일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, 배 분기말(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) 선불충전금 규모 및 신탁내역,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, 부보 금액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.</p> <p>㉓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을 신탁회사 및 보험회사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과 선불충전금의 지급사기, 지급장소,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들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,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게시하여야 합니다.</p> <p>1. 전자금융거래업자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</p> <p>2. 해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폐지한 경우</p> <p>3.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</p> <p>4.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</p> <p>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</p>	<p>제34조 (선불충전금의 보호 및 지급)</p> <p>① 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100분의 100 이상의 금액을 은행 등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별도관리하여야 합니다.</p> <p>1. 신탁</p> <p>2. 예치</p> <p>3.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지급보증보험</p> <p>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이용자의 재산이며, 선불충전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이용자는 회사가 선불충전금으로 별도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</p> <p>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고,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회사는 선불충전금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불충전금의 지급사유, 지급시기, 지급방법,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(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회사가 가상의 공간에 개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.)를 통하여 게시하여야 합니다.</p> <p>1.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</p> <p>2.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</p> <p>3.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</p> <p>4.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</p> <p>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</p> <p>④ 이용자는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제3항에 따라 지급 청구하려는 경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선불충전금관리</p>	<p>전자금융업자 용 모델약관 (‘24.9월 배 포) <선불충 전금의 보호 및 지급> 내 용으로 교체</p>

	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.	전자금융업자 용 모델약관 (‘24.9월 배 포) <선불충 전금 보호조 치의 고지 및 게시> 내용으 로 교체
<p>제35조 (선불충전금의 신탁 및 지급보증보험)</p> <p>㉑ 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전부를 신탁하여야 하며, 신탁업자에게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지시합니다. 다만, 원원말 기준 전체 선불충전금(제4항에 따른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금액은 제외)의 1/10에 해당하는 금액(이하 ‘지급준비금’)까지는 보통예금 등 안전자산 중 수시입출이 가능한 형태로 신탁회사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.</p> <p>㉒ 회사는 신탁된 선불충전금(지급준비금 제외)의 수익자를 이용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. 다만, 개별 이용자를 수익자로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특수목적법인(SPC)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.</p> <p>㉓ 회사는 당일 이용자 및 자급의 변동 내역을 신속하게 익일까지 신탁합니다.</p> <p>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선불충전금 중 일부를 신탁하지 아니하고 직접 운용(지급준비금 제외)하는 경우 회사는 운용대상 금액 전부에 대해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, 이 경우에도 회사는 운용대상 선불충전금을 안전자산으로 운용합니</p>	<p>제35조 (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 및 게시)</p> <p>① 회사는 이용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계약 체결시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.</p> <p>1.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방법</p> <p>2.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의 명칭 등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관한 정보</p> <p>3. 제34조제3항[선불충전금의 보호 및 지급조항]에 따른 선불충전금 지급사유, 이용자의 청구 방법 등 선불충전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</p> <p>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하여야 하고, 그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 변경시 즉시 게시된 고지 내용을 변경합니다.</p>	<p>전자금융업자 용 모델약관 (‘24.9월 배 포) <선불충 전금 보호조 치의 고지 및 게시> 내용으 로 교체</p>

타.		
----	--	--